[노부모부양 특별공급]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안내

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, 2단지 청약 당첨 시,
계약자격 적격여부심사를 위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당첨자(예비입주자 포함)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간내 미제출 시 계약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■ **제출기한 : 2019년 04.04.(목) ~ 2019.04.09.(화) / 접수시간 : 10:00~16:00**
■ **제출장소 : 대전 아이파크 시티 견본주택 (대전시 유성구 원신흥동 576-4번지)**
■ **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**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O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O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(전체 포함으로 발급)
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**사전 서류제출자도 인감도장의 경우 정당계약일에 다시 지참하여야 함**
	O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(전체 포함으로 발급)
	O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(대전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) **입주자모집공고일 4개월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발급**
	O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	O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	O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주택	'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'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※ 건물등기사항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O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당첨사실 소명서류 (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)
		O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피부양직계존속이 직접 발급을 요함)
		O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
		O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
		O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만 30세 미만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		O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	O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	
	O		위임장	당첨자	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, 접수 장소에 비치
	O		신분증, 인장	대리인	대리인 인장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

※ 유의사항
1.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(2019.03.21.) 이후 발행 분에 한함
2.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은 반드시 주민번호, 세대주 성명 및 관계, 주소변경 이력이 표기 되도록 발급
3.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 (배우자,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)
4. 상기 서류는 적격 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서류이므로,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 추가 제출하여야 함
5. 향후 적격여부 심사 과정에서 추가서류 또는 부적격 소명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으며, 서류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